

#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2. .  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도서관및독서진흥법 부칙 제4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한밭도서관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한밭도서관장의 정원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서기관으로 조정함(안 제4조).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

제24조(국·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.

#### 부 칙

제4조 (국·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에 관한 경과조치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.

### 나.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

#### 부 칙

제3조 (국·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임용시기) 법 부칙 제4조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”이라 함은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.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“지방서기관”을 “지방사서서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